

# 서 울 특 별 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대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391-4 / 전송 731-6790

문서번호 주개 58501- 1019  
시행일자 1993. 5. 26  
(경유) (제1안)  
수신 내부결재  
참조

취급	시 장	
보존	26/5/1993	
주 택국장	전경	26/5/1993
주택개량과장	법무 담당관심사필	개량1과장
개량계획과장		개량2과장
기안	장 광 용	기재

제목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증 개정조례(안) 일법예고



- 우리시가 90.5.24 제정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에 대하여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
-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증 개정조례(안)을 마련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하오니 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계제문안 : 공고안
- 나. 계제신문 : 시보 및 서울시민신문
- 다. 계제일자 : '93. 5.

첨부 1. 공고안 1부

2.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증 개정조례(안)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공보관

제목 공고문 시보 및 서울시민신문 계제의뢰

-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별첨 공고안을 시보 및 서울시민신문에 계제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계제문안 : 공고안
- 나. 계제신문 : 시보 및 서울시민신문
- 다. 계제일자 : '93. 5.

첨부 공고안 2부. 끝.

원본대조필

# 서 울 특 별 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대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391-4 / 전송 731-6790

문서번호 주개 58501- 1019  
시행일자 1993. 5. 26  
(경유) (제1안)  
수신 내부결재  
참조

취급	시 장	
보존	주택국장	전경
주택국장	주택개량과장	법무 담당관심사필
개량계획과장		개량1과장
기안	장 광 용	개량2과장

제목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증 개정조례(안) 일법예고



- 우리시가 90.5.24 제정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에 대하여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
-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증 개정조례(안)을 마련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하오니 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개제문안 : 공고안
- 나. 개제신문 : 시보 및 서울시민신문
- 다. 개제일자 : '93. 5.

첨부 1. 공고안 1부

2.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증 개정조례(안)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공보관

제목 공고문 시보 및 서울시민신문 개제의뢰

-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별첨 공고안을 시보 및 서울시민신문에 개제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개제문안 : 공고안
- 나. 개제신문 : 시보 및 서울시민신문
- 다. 개제일자 : '93. 5.

첨부 공고안 2부. 끝.

원본대조필

## 주택개량과장

(제3안)

수신 법무담당관

제목 일법예고 공고안 송부

1. 법제사무처리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증 개정조례(안) 일법예고 공고안을 별첨과 같이 송부합니다.

첨부 공고안 1부. 끝.



## 주택개량과장

(제4안)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증개정조례(안) 일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

1.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(93.5.)와 관련임(입니다)
2.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별첨 공고안 및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증개정조례(안)을 송부하니(하오니) 검토후 귀국, 실, 과 의견을 93.6. 까지 회시하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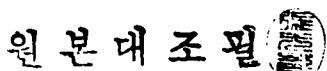
첨부 1. 공고안 1부

2.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증개정조례(안)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장

수신처 서국 1-14, 관계과, 건축지도과, 주차계획담당관, 도시개발공사(재개발과)

서구1-22(주택과장)



# 공 고

안

서울특별시 공고 제 1993-13호

제작년	1993. 1. 30.	수	11호
담당자	민계신자재장	법무 담당과	50 13 13

## "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증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"

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3. 5.

1993. 5. 16  
주차장부

서 울 특 별 시 장

### 1. 개정취지

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

### 2. 주요골자

가.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및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토록 함.

#### ※ 주차장설치 면제 기준

- 단독주택 : 건축물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
- 근린생활시설 :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
- 공동주택 [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미만 : 건축물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  
" " " 이상 : 건축물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

나.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지구에 대한 각종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사업시행의 원활을 기함.

다. 공동주택건설 지구내 권리변동 사항은 보상 및 분양계획등과 관련되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권리변동 사항을 제출토록 함.

라.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각시기 및 가격결정 방법을 명시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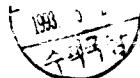
의 본 대 조

18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. 6. . 까지  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(참조 : 주택개량과장)에게 제출하여  
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(찬.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

원본대조필

19